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 목적

가. 아리아재가복지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동안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나.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계약 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내에 이용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가.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없음

의료급여수급권자 - 50% 경감

다. 급여비용은 이용자의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마.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4년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바.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 및 금액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630
가-2	60분 이상	24,120
가-3	90분 이상	32,510
가-4	120분 이상	41,380
가-5	150분 이상	48,250
가-6	180분 이상	54,320
가-7	210분 이상	60,530
가-8	240분 이상	66,770

4. 본인부담금 청구 및 납부

- 가. 센터는 급여제공내역을 정산하여 익월 1일까지 본인부담금을 청구 한다.
- 나. 이용자 및 보호자는 본인부담금을 익월 5일까지 센터에 납부한다.
- 다. 납부는 현금납부, 센터 명의의 계좌로 납부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사유

- 가.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나.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다. 급여제공자에게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 라.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급여 제공이 어려울 시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하였을 때
- 마.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바. 10일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이용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기관과 협의를 통해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 사.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아.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